www.me.go.kr

MINISTRY OF ENVIRONMENT

# 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 고시

2022. 7.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전체목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 123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13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목 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1
제2조(정의) ····· 11
제3조(기본원칙) ·····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5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 1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17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18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20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1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22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24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25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1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등) ····· 17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18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20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1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 22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24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25
제9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29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29 |
|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29 |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30 |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30 |
| 제17조(회의) ····· 31 | 제13조(회의) ····· 31 |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2 | |
|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 32 | |
|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33 | |
| 제21조(사무처) ····· 33 |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 33 |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34 |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34 |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 34 |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36 |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36 |
|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36 | |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37 |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37 |
|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39 |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39 |
| |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 40 |
| |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41 |
| |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42 |
| |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관리) ····· 45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 45 |
| |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46 |
| |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47 |
| |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47 |
|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48 |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48 |
|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 49 |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 49 |
|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52 |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52 |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52 | |
| |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53 |
|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55 |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55 |
|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57 | |
| 제34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 57 | |
|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 58 |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 58 |
| |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 59 |
| |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 60 |
| |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 60 |
| |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 61 |
| |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61 |
| |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62 |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62 |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62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 65 |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 65 |
|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65 |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65 |
|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67 |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67 |
|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67 |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67 |
|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68 |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68 |
|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70 |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70 |
|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 71 | |
|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 72 |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 72 |
|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73 | |
|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73 |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 73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 75 | |
| |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 76 |
|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76 |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76 |
| 제49조(사업전환 지원) ····· 79 | 제50조(사업전환 지원) ····· 79 |
|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 80 |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80 |
|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 80 | |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 81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 81 |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81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 81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
|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 83 | |
|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 83 |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 83 |
|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84 | |
|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 85 | |
|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85 | |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85 | |
| |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 86 |
|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86 | 제56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 86 |
| |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 86 |
| |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 87 |
| 제61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88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88 |
| 제62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 89 | |
| 제63조(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 90 | |
|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 90 | |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91 |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91 |
|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 92 | |
| |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93 |
|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93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제62조(녹색생활 확산) ····· 94 |
|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94 |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94 |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97 |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 97 |
| 제70조(기금의 용도) ····· 98 | |
|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99 | |
|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 99 |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 99 |
| |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99 |
| | 제67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 101 |
|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 101 | 제68조(구분 회계처리) ····· 101 |
| |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 101 |
|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101 | |
| **제11장 보칙** | **제11장 보칙** |
| 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 ····· 102 | |
| 제76조(국제규범 대응) ····· 102 | |
| 제77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 102 |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 102 |
| 제78조(국회 보고 등) ····· 103 | 제71조(국회 보고 등) ····· 103 |
|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104 |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104 |
| 제80조(청문) ····· 106 | |
|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106 | 제73조(권한의 위임) ····· 10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11<br>제83조(과태료) ····· 112<br>부칙 ····· 113 | 제74조(업무의 위탁) ····· 107<br>제75조(규제의 재검토) ····· 112<br>제7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112<br>부칙 ····· 113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정 2021. 9.24. 법률 제18469호 | 제정 2022. 3.25. 대통령령 제32557호<br>타법개정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br>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br>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br>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br>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br>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br>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br>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br>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br>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br>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br>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br>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br>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br>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br>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br>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br><br>**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br>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br>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br>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br>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br>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br>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br>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br><br>**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br>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br>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br>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br>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br><br>**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br>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br>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br>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br>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br>3.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br>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br>⑤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br>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br>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br>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 |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br>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br>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br>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br>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br>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br>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br>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br>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br>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br>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br>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br>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br>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br>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br>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br>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br>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br>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br>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br>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br>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br>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br>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br>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br>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br>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br>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br>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br>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br>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br>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br>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br>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br>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br>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농업·축산·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br>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br>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br>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
|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br>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br>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br>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br>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br>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br>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br>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br>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br>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br>③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br>2. 탄소중립시·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도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⑤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1. 탄소중립시·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br>2. 탄소중립시·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br>3. 탄소중립시·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br>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1.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br>2.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br>3.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br>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br>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br>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도계획 및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br>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와 시·군·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도계획 및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br>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br>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br>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br>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로 한다.<br>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br>2. 탄소중립시·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
|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br>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br>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br>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br>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br>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br>**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br>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br>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br>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br>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br>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br>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br>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br>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br>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br>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축산·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및 점검에 관한 사항<br>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br>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br>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br>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br>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br>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br>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br>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br>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br>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br>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br>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br>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br>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br><br>**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③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br>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br>**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br>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br>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br>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br>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br>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br>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br>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br>③ 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축산·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br>④ 위원회와 법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br>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br>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 |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br>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br>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br>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br>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br>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br>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br>2. 탄소중립시·도계획, 탄소중립시·군·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br>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br>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br>5.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br>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br>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br>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br>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br>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br>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br>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br>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br>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br>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br>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서의 검토·분석<br>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분석<br>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br>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
|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br>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br>1. 중앙행정기관<br>2. 지방자치단체<br>3. 시·도 교육청<br>4. 공공기관<br>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br>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br>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br>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br>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br>1. 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2. 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br>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br>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br>2.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br>3. 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br>⑧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br>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br>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br>⑦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⑫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br>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공개,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br>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식품·임업 분야<br>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br>3. 환경부: 폐기물 분야<br>4. 국토교통부: 건물·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건설 분야<br>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br>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br>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관리<br>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br>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br>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 작성 방법<br><br>**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br>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br>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br>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br>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br>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br>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br>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br>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br>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br>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br>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고시하는 사항<br>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br>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br>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br>1.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br>2.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br>3.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br>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br>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br>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종류<br>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br>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br>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br>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br>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br>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br><br>**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br>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br>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br>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br>4. 온실가스관리목표<br>5. 이행계획<br>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br><br>**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br>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br>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br>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br>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br>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br>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br>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br>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br>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r>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br>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br>2.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br>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br>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br><br>**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br>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br>2.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br>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br>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br>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br><br>**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br>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관리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분할·양수·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br>②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br>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br>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br>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br>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br>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br>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br>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br>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br>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br>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br>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br>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br>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br>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br>3. 탄소중립시·도계획 및 탄소중립시·군·구계획과의 연계방안<br>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br>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br>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br>2. 한국환경공단<br>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br>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br>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br>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br>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br>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br>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br>⑧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br>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br>2. 탄소중립시·도계획 및 탄소중립시·군·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br>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br>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⑪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br>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br>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br>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br>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br>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정책<br>2.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정책<br>3.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br>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br>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br>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br><br>②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공공기관<br>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br>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br>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br>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br>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br>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br>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br>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br>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br>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
|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br>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br>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②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br>1. 교통수단별·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br>2. 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br>3. 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
|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br>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br>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br>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br>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구축<br>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br>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br>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br>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br>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br>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br>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br>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br>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br>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점검 방안<br>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보전을 위한 방안<br>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br><br>**제34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이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기간과 참여자<br>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br>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br>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br>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br>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검증 가능성<br>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br>3.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br>④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br>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br>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br>3.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br>4. 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br>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br><br>**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①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br>②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br>③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br>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br>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br>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br><br>**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br>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
| ③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국제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이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br>②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br>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
| ④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멸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br>⑥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br>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br>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br>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br>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br>2.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br>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
| |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br>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2.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br>3.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br>4.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br>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br>③ 제2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br>④ 제2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br>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축산·산림 분야<br>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분야<br>3. 환경부장관: 폐기물·내륙습지 분야<br>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정주지·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 분야<br>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해운·항만·연안습지 분야 |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br><br>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 각종 정보·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br>1. 에너지 분야<br>2. 산업공정 분야<br>3. 농업·토지이용·산림 분야<br>4. 폐기물 분야<br>⑦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⑧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계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br>⑨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br>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br>2. 정부출연연구기관<br>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br>4. 공공기관<br>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단체<br>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br>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br>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br>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br>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
|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br>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br>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br>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br>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br>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br>1. 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br>2.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br>3. 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br>4.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br>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br>1. 점검 대상 및 일정<br>2. 추진실적의 작성 방법<br>3. 우수사례 선정 방법<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br>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 |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br>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br>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br>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 |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br>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br>1. 교통·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br>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br>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br>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br>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br>2. 기관의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분석·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br>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br>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⑦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
|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br>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br><br>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br>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br>2. 사업의 목표·내용·규모·범위<br>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br>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br>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br>②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한국수자원공사<br>2. 한국환경공단<br>3.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4. 정부출연연구기관<br>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br>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br>⑤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br>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br>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br>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br>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br>5. 수질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br>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br>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br>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br>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br>2. 산림·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br>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br>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br>5.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br>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br>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br>③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br><br>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br>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br>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br>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자재·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br>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br>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br>③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
|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br>1. 국공립 연구기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2. 정부출연연구기관<br>3. 한국환경공단<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br>②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r>1.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br>가. 기후위기적응대책<br>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br>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br>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br>3.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홍보 사업<br>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br>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br>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br>1. 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br>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전반을 평가<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br>⑥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br>⑦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 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br>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br>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 ④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r>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1.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br>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br>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
|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br>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한다.<br>1. 지정 대상 행정구역<br>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br>3.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br>4.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br>③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br>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br>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소상공인·산업·고용·노동·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br>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br>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br>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br>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br>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br>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br>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⑨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br>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⑪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br>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br>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br>1.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br>2.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br>3.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
| **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br>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br>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br>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br>2. 사업전환계획<br>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br>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br>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br>⑥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br>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개발 지원<br>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
|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br>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br>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br>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br>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br>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br>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br>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br>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br>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br>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br>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br>2.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br>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원<br>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br>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
|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br>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br>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br>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br>5.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br>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br>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br>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
|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br>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계획의 공개<br>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br>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br>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br>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br>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br>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br><br>**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br>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br>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br>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br>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br>③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br><br>**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br><br>**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br>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br>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6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br>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br>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br>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br>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br>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br>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기준·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br><br>**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br>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br>③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
| **제61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집적지·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br>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br>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br>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br>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br>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br>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br>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br>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br>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br>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br>7. 한국환경공단<br>8.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br>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br>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제62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63조(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①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br>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br>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br>②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br>**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br>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br>3. 폐기물의 선별·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br>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 |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br>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br>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br>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br>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br>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br>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br>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br>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br>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br>④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br>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운영 방안<br>3.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br>4.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④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br>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br>⑤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br>⑥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br>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br>⑧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br>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br>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br>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br>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br>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br>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 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br>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br>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br>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br>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br>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br>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br>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br>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br>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br>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br>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br>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br>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취소할 수 있다.<br>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br>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br>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br>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br>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br>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br>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br>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br>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br>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br>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br>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br>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정부의 출연금<br>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br>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br>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br>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br>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br>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br>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br>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br>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br>3. 기금의 자산운용<br>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br>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br>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br>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br>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br>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br>[시행일 : 2022. 1. 1.] 제69조<br><br>**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br>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br>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br>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br>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br>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br>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br>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br>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br>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br>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설치해야 한다.<br>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br>[시행일 : 2022. 1. 1.] 제70조 | |
|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br>[시행일 : 2022. 1. 1.] 제71조 | |
|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br>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br>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br>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2.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br>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br>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br>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br>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⑦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br>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시행일 : 2022. 1. 1.] 제72조 | **제67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br>[시행일 : 2022. 1. 1.] 제73조 |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
| |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br>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시행일 : 2022. 1. 1.] 제74조 | |
| **제11장 보칙** | **제11장 보칙** |
| **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제76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77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갱 |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신할 수 있다.<br>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br>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br>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br>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br><br>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br>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를 거쳐 작성·갱신한다.<br>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br>④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
|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br>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br>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br>가.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 현황 점검<br>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 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br>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제출<br>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 황의 점검<br>마.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br>바.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br>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br>가. 탄소중립시·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br>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br>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br>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br>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br>1.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br>2. 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br>3.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br>4. 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br>5.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
|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br>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br>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br>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br>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관리<br>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관리<br>6. 제39조제10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관리<br>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갱신<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br>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br>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1.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br>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br>1.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도계획 및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종합·보고 지원<br>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br>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br>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br>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br>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br>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에 관한 업무의 지원<br>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12.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제출 지원<br>13. 제39조제7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br>14.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 지원<br>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br>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제공의 지원<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제출 지원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br>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홍보<br>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br>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 지원<br>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br>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축산·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br>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br>⑥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br>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⑦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br>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br>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br>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br>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br>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br>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br>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br>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다.<br>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0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br>1. 정부출연연구기관<br>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br>3. 공공기관<br>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br>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항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br>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br>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br>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br>⑮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전문위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br>2.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 **제7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br>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br>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br>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절차: 2022년 3월 25일<br>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절차: 2022년 3월 25일 |
|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7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징수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부칙** 〈제18469호, 2021. 9. 24.〉<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br>**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br>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br>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br>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군·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br>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br>**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 **부칙** 〈제32557호, 2022. 3. 25.〉<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3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br>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br>**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중 정주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포함하여 제출한다.<br>**제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br>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9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br>**제5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3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 보고서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2022년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지정된 것으로 본다.<br>**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br>**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br>**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br>**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br>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br>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 | 10월 3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제6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br>**제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br>**제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는 이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본다.<br>**제9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br>**제10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되어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는 법 제46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본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br>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br>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br>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br>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br>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br>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br>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br>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 **제11조(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은 이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으로 본다.<br>**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br>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7조의3제3항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변경"으로 한다.<br>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8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br>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br>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9조의2를 삭제한다.<br>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br>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br>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br>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br>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br>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원회를 말한다)”로 한다.<br>제9조제2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한다.<br>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br>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br>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br>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br>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br>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br>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br>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br>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br>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br>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br>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br>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으로 한다.<br>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br>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제26조·제27조”로 한다.<br>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br>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br>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br>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br>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br>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br>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br>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br>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 |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br>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br>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br>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br>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br>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br>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br>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br>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7조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br>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br>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br>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br>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br>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br>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br>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한다.<br>제3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으로 한다.<br>제9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br>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로 한다.<br>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br>제22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br>⑪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br>제22조의10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br>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br>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br>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br>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br>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br>⑯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⑫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4조의2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9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br>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br>**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br>**부칙** 〈제32697호, 2022. 6. 14.〉<br>(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br>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개정한다.<br>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br>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br>⑱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br>⑲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br>**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 별표 1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37.「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br>별표 3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40.「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br>⑥부터 ㉗까지 생략<br>**제3조** 생략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 | --- |
|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 목 차

[별표 1] 중·장기 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 ····· 127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 129

[별표 3]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6조제1항 관련) ····· 13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제2항 관련)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 중·장기 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

1.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3.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0.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2.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4.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5.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8.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1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4.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7.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8.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38.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0.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45.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4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47.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48.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5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항클러스터 기본계획
5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5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5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9. 「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6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6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
|---|---|
| 가. 에너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
| 나. 수자원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
| 다. 산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4)는 제외한다) |
| 라. 도로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
| 마. 폐기물 처리시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
| 가. 에너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
| 다. 도시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 라. 항만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br>「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
|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바. 도로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사. 폐기물 처리시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
|---|---|
| 가. 에너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br>「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br>「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br>「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br>「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
| 다. 도시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도로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마. 공항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 바. 폐기물 처리시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

비고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바목 및 사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6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6.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8.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9.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2.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6.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8.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1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3.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2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26.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7.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34.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5.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7.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3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41.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3.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48.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49.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0.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5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
5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목 차

## 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39
제2조(용어의 정의) ····· 139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 142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 142
제5조(비밀 준수) ····· 143
제6조(자료제출 협조) ····· 143
제7조(정책협의회) ····· 144


###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 144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 144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 145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 145
제12조(건물분야 특례) ····· 145
제13조(교통분야 특례) ····· 146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 146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 146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146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 147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 147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 147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 147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 147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 148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148
제22조의2(관리업체의 지정취소) ····· 149


###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 149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 149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 149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 ····· 150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 150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150
제29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151
제30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 151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 152
제32조(이의 신청) ····· 152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152
제34조(이행실적 확인) ····· 154
제35조(개선명령) ····· 154

## 제4장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 154
제37조(명세서의 제출) ····· 154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155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 155
제40조(명세서의 확인) ····· 155

##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 156

## 제6장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관리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 156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 156

## 제7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156

## 제8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45조(점검·평가의 원칙) ····· 156
제46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 156
제4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 157
제48조(관련 자료의 제출) ····· 157
제49조(자료의 제출방법) ····· 157
제50조(비밀유지 의무) ····· 157
제51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 157
제52조(사전조사) ····· 158
제53조(서면점검·평가) ····· 158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 158
제55조(점검·평가보고서의 작성) ····· 158
제56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 158
제57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 158
제58조(점검·평가결과의 반영) ····· 159
제59조(개선명령 등) ····· 159

# 제2편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 제1장 총칙

제60조(목적) ····· 159
제61조(타 규정과의 관계) ····· 159
제62조(비밀 준수) ····· 159

## 제2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 160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 160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 161
제66조(명세서의 작성) ····· 161

## 제3장 명세서의 공개

제67조(명세서의 공개) ····· 161

## 제4장 보칙

제68조(재검토기한) ····· 161

부칙 ····· 161

[별표 1]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제28조제5항 관련) ····· 163
[별표 2]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제29조제5항 관련) ····· 164
[별표 3]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시 고려사항 (제30조제4항 관련) ····· 165
[별표 4] 목표관리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제36조 관련) ····· 166
[별표 5]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 166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54호, 2022. 3. 23., 전부개정.]

## 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6. "관리업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제8조제2항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8.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9.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10.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두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1.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13.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

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4.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고"란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1. "산정"이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23.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24.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25.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6. "업체 내 사업장"이란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27.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28.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9.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0.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이란 일정 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1. "예비관리업체"란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말한다.
3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_6$)을 말한다.
3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

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34.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5.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36.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37. "이행계획"이란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38.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9.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40. "종합적인 점검·평가"란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시정·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1.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42.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라. 「고등교육법」제3조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전문개정〉

43.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4.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45.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46.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47.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48. "바이오매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49. "배출원"이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50.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51. "명세서"란 관리업체가 해당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 지침 제2편 제2장에 따라 작성한 배출량 보고서를 말한다.

5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이란 관리업체 조직경계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부 및 외부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한 후 포집하여 이동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명세서의 확인 등 목표관리와 관련한 제반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3.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4.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5.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6.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공표
7.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8. 부문별 관장기관이 검토한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확인
9.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에 관한 부문별 관장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10.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
4.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관련 자료 제출
5.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6.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보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
3. 심사위원회의 운영
4.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증·관리
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7.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④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3.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
4.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6.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예비관리업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 누락·중복 및 적절성 등 확인
2.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총괄·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및 연구·지원
3. 관리업체 이의 신청에 대한 관장기관의 재심사 결과 확인
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
5. 그 밖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4. 관리업체 선정·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5.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① 관리업체의 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기획재정부 및 탄소중립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제9조제1항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업체
2.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일부 업종의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리업체 업종 구분은 제1항의 후단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및 임업(01~02), 제조업(10~12, 16, 식료품, 음료, 담배,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2. 환경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수도사업(36)
3. 국토교통부 :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해운·항만분야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7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해양 및 수산 분야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 해양수산부 : 어업(03), 수상 운송업(5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해운·항만 분야
5. 산업통상자원부 : 그 외 산업·발전분야 업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관장기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① 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환경부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reenhouse Ga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http://airemiss.nier.go.kr)
2.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netis.kemco.or.kr)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
3. 국토교통부의 "운수행정시스템"(ITA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reentogether.go.kr/ifm/cmm/selectMain.d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
4. 해양수산부의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https://www.sem.go.kr)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2편제2장의 작성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1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제1항의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해서는 안된다.

**제12조(건물분야 특례)**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는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3조(교통분야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통분야에 속하는 관리업체를 지정할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본다.

⑥ 동일 업체 하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는 교통분야 사업장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별 교통분야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관리업체로 지정한다.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17조의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21조의 관리업체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의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관리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법과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되거나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4. 관리업체 지정 고시 이후 분할·합병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로 인하여 관리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중 이의신청 관리업체의 검증을 수행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의2(관리업체의 지정취소)** ① 계획기간 중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관리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4.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탄소 중립 관련 국제동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5. 국내 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준연도 중 신·증설(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①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되, 변경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수정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의해 기준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된 경우 변경사유 접수 30일 이내에 배출허용량 등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목표를 설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해당 연도에 새로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업체별 목표 설정 이후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로 인하여 목표관리를 받게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는 다음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관리 계획기간으로 한다.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①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과 신·증설 시설(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 산정은 제24조제1항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
2.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증감률
3.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원료 사용량,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연면적 등을 말한다)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한 배출량
5. 기준연도 배출시설 평균 배출량
6. 최근연도 배출시설 배출량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에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수립 시 설정한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④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목표를 부여받는 신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의한 목표 협의 시 파악한 감축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의한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설정방법 및 감축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의 목표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축 목표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의 심의사항을 계획기간 전년도 8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기간 전년도 9월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예상배출량
2.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 연도감축률

③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부하율(또는 가동률)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가동시간
3.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률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9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
2. 해당 기존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
3. 해당 기존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③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
3. 해당 신·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0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공동으로 제29조의 목표설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공정,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및 신·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과 국내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조사·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③ 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과 이에 따른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 대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실적·성능을 보유한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 및 운전방법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⑤ 국내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BAT)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고시한다.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1. 발전
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②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통보받기 이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인정된 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유형, 적용범위,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통보받기 이전에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국가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한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업체의 목표가 설정된 후 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이 등록된 때에도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제32조(이의 신청)**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에 첨부·제출해야 한다.

1. 신청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심의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관리업체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을 일정기간 이상 미가동하거나 폐쇄한 경우 실제 가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2. 목표설정 시 고려했던 신·증설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실질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 가동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
3.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조직경계 변경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

4.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7.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관리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이행
9. 관리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계획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신·증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배출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와 최종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표와 배출량 조정결과와 사유,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6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달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이행실적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기준 준수여부
3. 제33조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
4.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4조제1항의 확인결과를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개선명령)**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관리업체의 실적이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개선기간이 이행연도와 중복되는 업체에게는 개선을 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제4장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관리업체는 이 지침 제2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별표 4와 같다.

**제37조(명세서의 제출)**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해당 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제64조제3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 관리업체는 제4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재제출해야 한다.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계획기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계획기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을 말한다)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해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된 이행계획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해당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명세서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 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세서를 받는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에 제출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에 의해 명세서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검증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한다.

## 제6장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관리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센터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해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5항,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실적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고시한다.

## 제7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한다.

## 제8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45조(점검·평가의 원칙)** ①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이하 "점검·평가"라 한다)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검·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 점검·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점검·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46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①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부문별 관장기관

2. 제1호의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점검·평가 대상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 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집행 등의 모든 사무가 점검·평가 대상이 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소관 사무를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업무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①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체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인·허가 및 착공 관련 자료
2. 신설 시설 설계 관련 보고서 및 내역서
3. 신설 시설의 활동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

③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48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 제46조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지체 없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9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문서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서의 정본 또는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직접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거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계획, 명세서 등은 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 의무)** ① 점검·평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한다.

**제51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연간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점검·평가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점검·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점검·평가 대상기관
3. 점검 평가의 내용
4. 점검·평가의 방법 및 시기

5.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
6. 그 밖에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52조(사전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센터에 구축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53조(서면점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52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② 점검·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내용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의 이행실적,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관장기관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공동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조사사유 및 일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소관 관장기관은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④ 공동조사반은 활동기간, 공동조사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공동조사반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5조(점검·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53조에 따른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
2. 점검·평가내용 및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4. 그 밖에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④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조사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 점검·평가결과 및 제54조의 공동실태조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그 밖에 점검·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58조(점검·평가결과의 반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제59조(개선명령 등)** ① 제57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보전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편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 제1장 총칙

**제60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는 이 지침 이 편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명세서를 보고, 공개할 경우 이 지침 이 편의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대하여 이 지침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센터에서 공표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그밖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62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 이 편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부문별 관장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이 편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2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본다.

1.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2. 조직경계 결정방법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5.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
6. 배출계수 활용 및 개발
7.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8. 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9.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0.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
11. 품질관리 및 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의 명세서 작성 서식에 관한 사항은 배출량 인증지침 제86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관리업체는 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배출량 인증지침을 따른다.

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66조(명세서의 작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장 명세서의 공개

**제67조(명세서의 공개)** ① 명세서 공개에 관하여는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제6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22-54호, 2022.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제1편의 제29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 실적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 구축 등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제38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지침 제27조제6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는 2023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제34조제3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는 2023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업 분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건설업 분야 특례에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배출량 인증지침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매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는 다음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5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제28조제5항 관련)

### 1.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 방법

$$EA_company_{i,j} = \sum_k EA_inst_{i,j,k} + \sum_k EA_new_inst_{i,j,k}$$

*i* : 특정 부문 또는 업종

*j* : 특정 관리업체

*k* : 특정 배출시설 (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EA_company*$_{i,j}$ : *i*업종 *j*업체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 이행연도별 배출허용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EA_inst*$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EA_new_inst*$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 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 2.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 방법

제3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산정한다.

$$EA_inst_{i,j,k} = EE_{i,j,k} \times CF_i$$

*EA_inst*$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목표량($tCO_2$/yr)

*HE*$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tCO_2$)

*CF*$_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 3.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산정한다.

$$EA_new_inst_{i,j,k} = C_{i,j,k} \times D_{i,j,k} \times t_M \times EV_{i,j,k} \times CF_i$$

*EA_new_inst*$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y년도 목표량($tCO_2$/yr)

*C*$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설계용량(MW, t/h)

*D*$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부하율
(부하율은 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용량을 의미한다)

*t*$_M$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y년도 예상 가동시간 (h/yr)

*EV*$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최근 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tCO_2$/t, $tCO_2$/TJ 등)

*CF*$_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별표 2]

#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29조제5항 관련)

## 1.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 방법

$$EA_company_{i,j} = \sum_k EA_BM_inst_{i,j,k} + \sum_k EA_BM_new_inst_{i,j,k}$$

*i* : 특정 부문 또는 업종

*j* : 특정 관리업체

*k* : 특정 배출시설 (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EA_company_{i,j}$ : *i*업종 *j*업체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_2$-eq)

$EA_BM_inst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EA_BM_new_inst_{i,j,k}$ : *k*신·증설 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 2.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 방법

여기에서 기존 배출시설이란 관리업체로 계획기간의 목표를 부여받는 연도 이전에 정상가동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EA_BM_inst_{i,j,k} = EAL_{i,j,k} \times BM_{i,j,k}$$

$EA_BM_inst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_2$-eq)

$EAL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예상 활동자료량 (t/yr)

$BM_{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벤치마크 계수($tCO_2$-eq/t)

## 3.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여기에서 신·증설 시설이란 관리업체로 계획기간의 목표를 부여받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EA_BM_new_inst_{i,j,k} = C_{i,j,k} \times t_M \times RD \times BM_{i,j,k}$$

$EA_BM_new_inst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_2$-eq)

$C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설계용량(MW, t/h)

$t_M$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일일 가동시간 (h/d)

*RD* : *k*신·증설시설의 y년도 가동일수 (days)

$BM_{i,j,k}$ : *i*업종, *j*업체, *k*신·증설시설의 벤치마크 계수($tCO_2$-eq/t)

## 4. 배출활동별 배출시설 종류 및 벤치마크 할당 계수 개발방법 등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공정 및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고시할 수 있다.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배출시설별 물질·에너지 수지자료와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할 수 있다.

[별표 3]

##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시 고려사항(제30조제4항 관련)

**가. 최적 또는 최고 수준과 관련한 고려요소**

1)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 수준의 공정, 시설 및 운전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2)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3) 신뢰할 만한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그 기능이 시험되고 증명되어진 최선의 기술과 공정, 설비, 운전방법을 의미한다.

**나.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고려요소**

1)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뜻한다.

2) 파일롯(pilot) 규모로서 실증된 기술도 원칙적으로 최적가용기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양산단계에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최적가용기법에는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도 해당된다.

4) 새로운 기술의 성공사례가 있을 경우 최적가용기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검증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건하에서 관련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모 및 특성(내구성, 신뢰성 등)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외국에서 개발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 감축기술과 관련한 고려요소**

1) 저감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면 공정의 설계와 운전자의 자질 등도 기술의 범주에 포함한다.

2) 온실가스의 사후처리 기술(end of pipe technology) 뿐만 아니라 연료의 대체, 연소기술, 환경 친화적인 공정과 운전방법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군을 총칭한다.

**라. 기타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시 고려요소**

1) 환경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적가용기법 (BAT)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커야 한다.

2) 기존 및 신규공장에 최적가용기법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3)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회수와 재사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규제, 인·허가 등이 해당기술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을 고려한다.

6) 온실가스와 기타 오염물질의 통합감축을 촉진하여야 한다.

[별표 4]

## 목표관리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제3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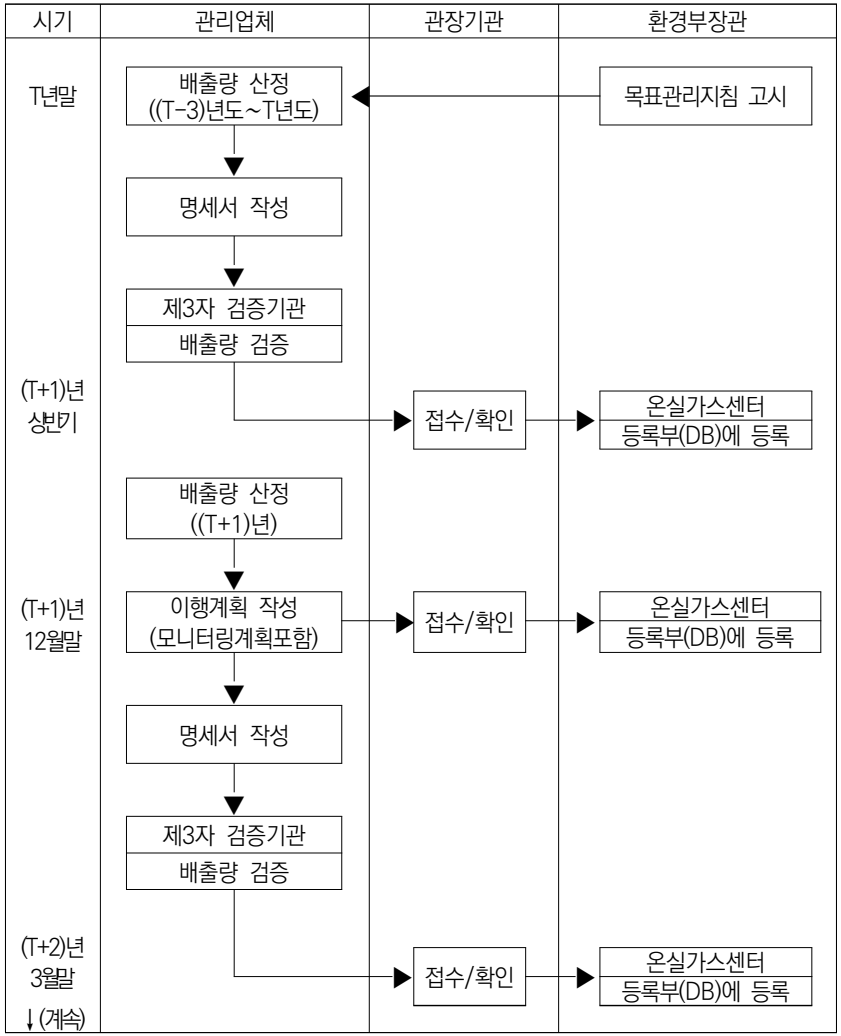


[별표 5]

##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제64조제3항 관련)

| 1단계 |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 제출 |
|---|---|
| 관리업체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체 개발 산정방법 및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경우,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계획이 포함된 제38조에 따른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 |

▼

| 2단계 |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및 근거 제출 |
|---|---|
| 관리업체는 기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결과를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 |

▼

| 3단계 |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 장관에게 검토결과 통보 |
|---|---|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 |

▼

| 4단계 | 환경부 장관의 확인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확인결과 통보 |
|---|---|
| 환경부 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의 검토 결과에 대해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 개발결과와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 |

▼

| 5단계 | 관리업체에게 확인결과 통보 |
|---|---|
|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한다. | |